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 지급 목적 및 지출 용도 제한 폐지 >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36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 지급 목적 및 지출 용도 제한 폐지	2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의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3.

다. 회 부 일 : 2025.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원 목적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 향유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문화재구역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이 증가한 탐방객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매년 지원금 정산 및 협의 절차 등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가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 지급 목적 및 지출 용도 제한 폐지(안 제49조제4항)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관람료 감면비용의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지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생략)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u>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대통령령으로</u> ----- ----- <u>관람료를</u> ----- <u>지원하여야 한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이에 국가유산청은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관람료를 지원하고 있음.
- 관람료를 지원받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민간 소유자 등은 지원금을 인건비, 경상경비(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교육 및 홍보, 안전관리), 시설관리비 비목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매년 정산·실적보고서, 회계 검사보고서 등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야 함¹⁾.

1) 국가유산청, 「2025년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 집행지침」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 집행항목]

비목	세부항목	주요내용
인건비	인건비	• 기관운영 인건비 및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경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전기, 수도, 통신 등 공공요금, 수수료,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 관람, 체험, 휴게 및 편의시설 관리 물품구입 등
	교육 및 홍보	• 교육·홍보,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관리	• 소방, 전기·통신, 냉난방 유지관리 등 • 관람객 안전장비, 구호 및 구급 물품 등
시설관리비	시설관리	• 관람객 안전을 위한 경미한 시설물 보수 관리 등
관람환경 개선비	시설관리	• 청소, 주차관리, 관람객 안내 관련 노무비
		• 관람, 체험, 휴게 및 편의시설 관리
		• 관람객 안전관리 장비 및 위생, 구호 물품

자료: 국가유산청, 2025년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집행지침

○ 그런데 현행 제도는 지원 목적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국민 향유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관람료 폐지 이후 사찰 등이 증가한 탐방객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지원금 정산 및 협의 절차 등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지출 용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민간 소유자 등이 관람료 감면을 반대급부로 받은 지원금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지원을 현행 재량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이 관람료 감면에 따른 민간 소유자 등의 재산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민간 소유자 등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동 정책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민간 소유자 등의 신규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행법은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데²⁾, 이러한 방식은 손실 보전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민간 소유자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지원의 형식을 보조금이 아닌 보전금으로 전환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봄.

-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 제22대국회³⁾에서 발의된 바 있음.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박정하·임오경의원안과 동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③ (생략)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 및 시기를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382호)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임이자 의원안은 관람료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박정하·임오경 의원안은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임이자의원안 및 박정하·임오경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임이자 의원안	박정하·임오경 의원안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생략)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 ----- ----- ----- ----- ----- <u>대통령령</u> <u>으로</u> ----- ----- <u>관람료를</u> <u>지원하여야 한다.</u>	④ ----- ----- ----- ----- ----- ----- ----- <u>대통령령</u> <u>으로</u> ----- ----- <u>관람료</u> <u>를 지원할 수 있다.</u>

○ 다만, 기획재정부는 문화유산 공개에 대한 관람료 징수 목적 감안 시 관람료 감면에 따른 국고 지원은 문화유산 관리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도 문화유산 관람료를 이미 지원

중이므로 지원을 강행 규정화할 실익이 없으며, 개정 시 추후 상황변동 등에 따라 관련 정책 변동이 필요할 경우에도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국가 또는 관람료 지원이 의무화될 경우 민간 소유자 등의 자율적 관리 책임 의식이 약화되어 형식적 공개, 운영 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국가유산청은 관람료 감면에 따른 보전비용의 목적과 용도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나, 관람료 감면에 따른 지원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참 고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 주요내용

- 사업명: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 사업목적: 국가지정유산 공개에 따른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으로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기회 확대 및 국가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 지원
- 사업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보조금)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준용규정)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국가지정유산 소유자(관리단체)
 - 지원조건: 국가지정유산(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을 공개하면서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 지원내용: 관람료 수입 감면비용, 관람환경개선 시설관리유지비
- 사업방식: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사업기간: 2023 ~ 계속
- 소요예산: ('23) 419억원, ('24) 552억원, ('25) 566억원

□ 최근 3년간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지원현황

- 사업내용
 - 국가지정유산의 민간소유자(관리단체)가 징수하던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에 감면된 비용 지원
 - 관람료 감면 이후 관람객 증가에 따른 국가유산 안전관리 및 관람편의 시설 정비 및 개선
- 지원현황

지원년도	2023	2024	2025	비고
사업대상	64개소	64개소	65개소	
지원금액	419억원(8개월)	552억원(12개월)	566억원(12개월)	

* 미참여기관: 단양고수동굴, 강릉 선교장, 구례 운조루 고택, 제주 삼성혈

□ 사업 추진 효과

-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경제적 가치 추정액: 2,566억원 * 관련 연구 용역('24.11월)
-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강화: 1,268억원,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1,298억원